

#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3420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2024. 2. 23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(시행 2023.10.11.)
- 만 나이,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변경

- 「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」  
→ 「김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
나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조 ~ 제4조)

- 보건위생물품 → 생리용품으로 변경함

다.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지원근거 신설(안 제3조)

- (기존)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  
+ (신설) 관내 체류등록 외국인 및 관내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

라. 배부 → 지원으로 변경(안 제4조)

## 4. 검토의견

- 본 사안은 만 나이,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관내 체류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한층 더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.